

목차

CONTENTS



| | |
|--------------------------|-----------|
| 자살 위기 대응 | 5 |
| 1. 자살 위기자의 이해 | |
| 2. 자살 위기 학생 면담과 대처 | |
| 3.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 |
| 4.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이 필요할 때 | |
| 급성 정신증 위기 대응 | 13 |
| 1. 급성 정신증 이해 | |
| 2. 급성 정신증 학생 면담과 대처 | |
| 3.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 |
| 공격적 · 폭력적 위협 대응 | 17 |
| 1. 공격적 · 폭력적 위협 이해 | |
| 2. 공격적 · 폭력적 위협 대처 행동 | |
| 3.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 |
| 사건 · 사고로 인한 위기 대응 | 21 |
| 1. 사망 · 상해 사고 대응 | |
| 2. 사건 · 사고 보고 체계 | |
| 3.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해 | |
| 4.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 |
| 성희롱 · 성폭력 사건 대응 | 27 |
| 1. 성희롱 · 성폭력 이해 | |
| 2. 성희롱 · 성폭력 대응 | |
| 3.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 |
| 4. 성희롱 ·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 |
| 승실대 상담센터 소개 | 35 |



대학장면에서 위기대응 매뉴얼

- 교직원용 -



자살 위기 대응

1. 자살 위기자의 이해
2. 자살 위기 학생 면담과 대처
3.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4.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이 필요할 때

01

자살 위기자의 이해

긴급 신호

이런 경우 위험합니다.

1. 이전에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2. 자살 도구를 가지고 있어요.
3. 유서를 썼어요.
4. 요즘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5. 최근 가족의 죽음이나 질병과 같은 힘든 일이 있었어요.
6. 알코올 중독이 있어요. (충동성 때문에 이럴 때 더 위험합니다)
7. 가족이나 친구, 전문가의 도움받기를 거부해요.

이런 말을 합니다.

1. 자살하고 싶다고 자주 이야기를 해요.
2. “죽고 싶다”고 직접적인 표현을 하기도 해요.
3.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않아도 아무런 미련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야 자살하는 사람들 심정을 알 것 같아요”, “사고가 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와 같은 간접적인 자살 의도를 표현했어요.
4. SNS에 자살 관련 글을 남겨요. (잠깐 남겼다가 지우는 경우도 해당)
5. 죽은 가족, 친구와 만나고 싶다는 표현을 하기도 해요.
6. 자살한 사람들이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런 행동을 합니다.

1. 최근 결석과 지각을 많이 했어요.
2. 갑자기 학점이 낮아졌어요.
3.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해요.
(아끼던 물건을 친구들에게 나누어주기, 지인들에게 편지쓰기 등)
4. 어긋났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거나 신변 정리를 하는 모습이 보여요.
5. 생물학적 욕구(음식, 수면 등)가 현저히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요.
6.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이 보여요.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 매일 같은 옷,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음)
7. 안색이 어둡고 눈빛이 멍해요.

이런 감정 표현에 주의합니다.

1. 극도로 우울해하고 불안해하며 지쳐있어요.
2. 많이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다가 갑자기 차분해지고 편안해 보여요.
(자살을 결심하면 이런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3. 심하게 의기소침하고 죄책감을 느껴요.

판단과 대응이 어려울 경우
상담센터(상담팀 02-820-081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

자살 위기 학생 면담과 대처

다음 사항을 주의하세요.

1. 판단하기

죽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죽는다고 해결되는 건 없어.”

“죽는 건 일종의 도피야.”

“자살은 어려운 선택이야.”

2. 훈계나 충고하기

학생의 문제와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훈계나 충고를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픈 만큼 성장한다는 말이 있잖니. 현재의 고통이 성장의 밑거름이 될 거야.”

“너보다 어려운 친구들도 잘 살고 있어.”

3. 설부른 위로나 이해한 척 하기

학생의 상황을 다 알겠다는 듯이, 이제 곧 괜찮아진다는지 하는 위로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신뢰감을 가지기 어렵게 합니다.

“난 너의 마음을 다 알겠어. 그러니 진정해.”

“내일 아침이면 좋아질 거야.”

“이 고비만 넘기면 다 잘 될 거야. 잘 할 수 있지?”

4. 부정하기

당황스러운 마음에 학생이 이야기하는 죽고 싶은 마음, 생각을 부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부정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학생 설마 죽고 싶은 건 아니지?”

“뭐 그런 문제로 죽을 생각까지 하니?”

“그냥 힘드니까 하는 생각이지?”

경청과 공감의 마음으로 만나주세요.

자살을 생각했던 이유를 이해하려는 마음 자세 (경청),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을 생각할까 하는 마음 자세 (공감)로 만나주세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이 힘들었나 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

“그래서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던 거구나.”

02

자살 위기 학생 면담과 대처

학생이 심리적으로
위기라는 것이
확인되면
다음의 질문을 합니다.

학생이 오랫동안
우울하고
삶이 많이 힘들었다고
한다면 다음을 확인합니다.

자살생각 ▶ 계획 ▶ 시도
순으로 위기 수준 파악

일상의 힘든 점, 어려운 점 묻기

“요즘 어떻게 지내? 혹시 힘든 일 있니?”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니?”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어? 힘든 일, 고민되는 일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이야기해주면 좋겠다.”
※ 힘든 게 없다고 말하지만, 힘들어 보이면 상담센터를 권해줄 수 있습니다.

자살 생각 파악하기

A: “사는 게 너무 힘들 때 우리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OO도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니?”
B: “네. 정말 이리다 진짜로 자살할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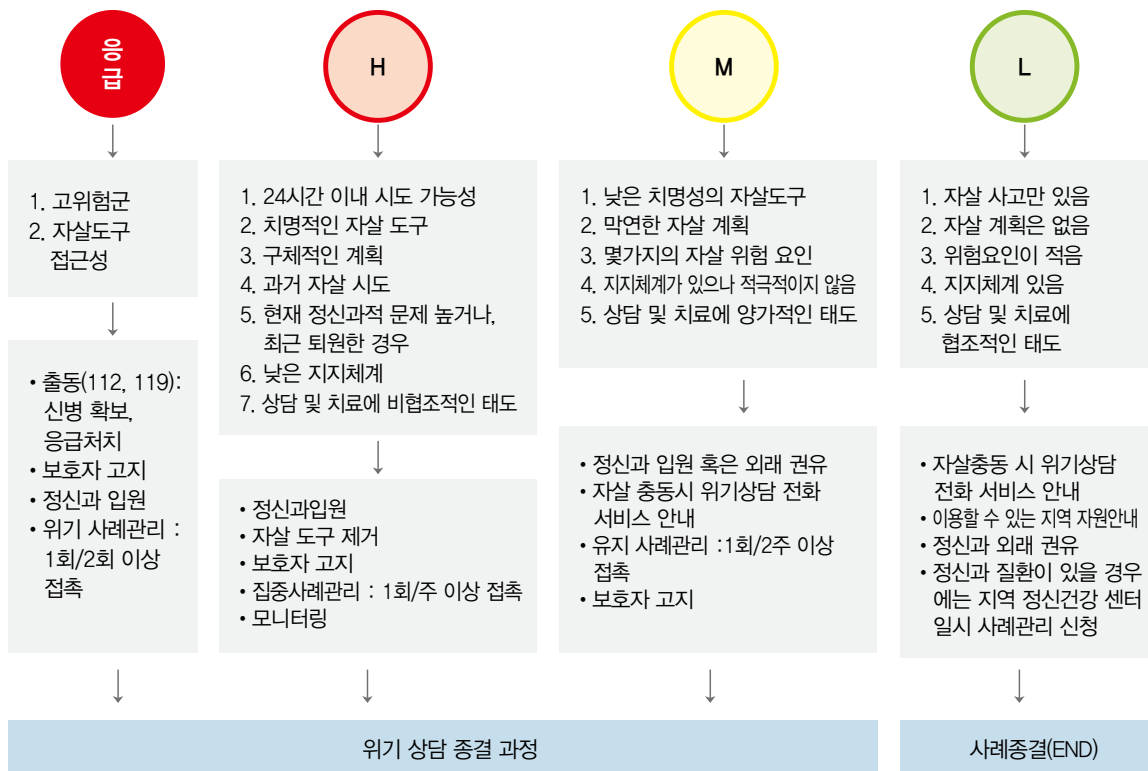
자살 계획 파악하기

A: “혹시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세우고 있니?”
B: “사실 건물 옥상에 올라가다 내려온 적이 있어요.”
or B: “약을 모아놓기는 했어요.”

자살 위기 대처

A: “너의 안전을 위해 부모님께 상황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해도 되겠니?”
B: “음... 네, 그렇게 해주세요.”
▶ 보호자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보호자가 올 때까지 학생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상담센터 상담을 권유합니다.
A: “너의 안전을 위해 부모님께 상황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해도 되겠니?”
B: “안 알려시면 좋겠어요.”
A: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보는 건 어떨까? 내가 연락해줄 수도 있어.”
B: “네... 한 번 생각해볼게요.”
▶ 보호자 연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상담센터 상담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권유합니다.
▶ 학생이 보호자 연락에 동의하지 않아도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 | |
|--|---|---|---|
| <p>자살 생각 O</p> <p>구체적 계획 X</p> <p>자살시도 X</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센터(02-820-0814)연락 • 상담센터에서는 교육 배려자를 위한 약물치료와 심리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p>자살 생각 O</p> <p>구체적 계획 O</p> <p>자살 시도 X</p> <p>자살 생각 O</p> <p>구체적 계획 O</p> <p>자살 시도 O</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센터(02-820-0814) 연락 • 보호자 연락 (할 수 있다면, 학생 동의하에) • 보호자가 학생과 함께 인도록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권유 |
|--|---|---|---|



〈그림 1〉 자살 위기 평가 및 개입

〈표 1〉 자살 위기 시 유관 기관 연락처

| | | | |
|---------------|---------------|--------------|---|
| 송실대 긴급전화 | ☎ 02-820-0119 | 동작 소방서 | ☎ 119 (주간) 02-845-1196 (야간) 02-847-1190 |
| 송실대 상담센터 | ☎ 02-820-0814 | | |
| 청소년 전화 | ☎ 02-1388 | 동작 경찰서 | ☎ 112/182 |
| 생명의 전화 | ☎ 1588-9191 | 보건복지부 콜센터 | ☎ 129 |
| 자살예방센터 핫라인 | ☎ 1577-0199 |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 ☎ 02-3458-1000 |
| 국회 생명사다리 상담센터 | ☎ 02-788-0479 | 동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 ☎ 02-820-1114 |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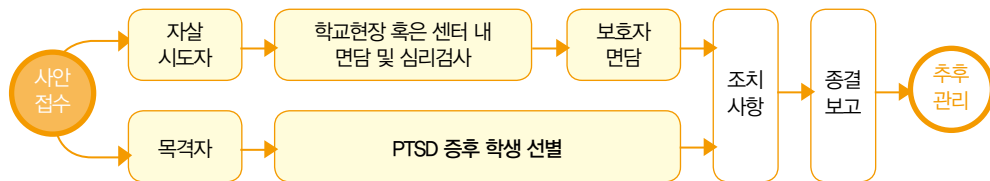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자살 시도 시 - 치명률이 높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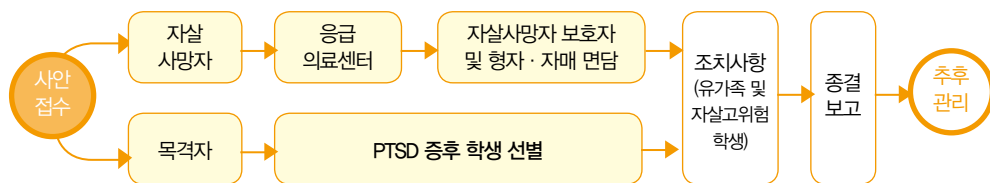
- ① 치명률이 높은 경우란 의식불명, 중태 상태로 발견, 추락, 목조름, 골절, 다량 출혈, 심한 물리적 외상, 위험성이 높거나 위험도를 알 수 없는 약을 먹은 경우 등을 의미한다.
- ② 응급 의료센터인 119와 경찰 112에 신고한다. 학생처에 연락한다.
- ③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 ④ 자살 시도자가 정신의료 기관에 연계되었는지 확인한다.
- ⑤ 목격자들 중 PTSD 증후를 보이는 학생들이 있는지 선별하여, 상담센터에 연계한다.

자살 시도 시 - 치명률이 낮은 경우



- ① 치명률이 낮은 경우란 분명한 의식 상태에서 가벼운 자해나 위험성이 낮은 약제를 먹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② 학생은 학교상담센터에 연계하고 면담과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학생처에 연락한다.
- ③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 ④ 목격자들 중 PTSD 증후를 보이는 학생들이 있는지 선별하여, 상담센터에 연계한다.

자살 사망 발생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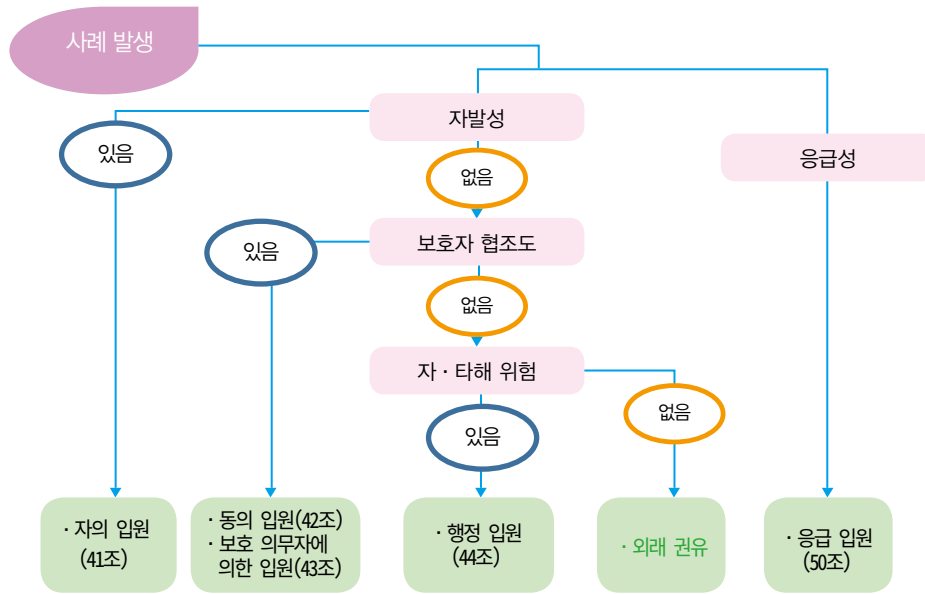


- ① 자살 사망자가 발생한 후에는 응급의료센터 119와 경찰 112에 연락 한다.
- ② 학생처에 연락한다.
- ③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 ④ 목격자들 중 자살 고위험 학생들이 있는지 선별하여, 상담센터에 연계한다.

04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이 필요할 때

자살 위기나 급성 정신증이 발생할 때에도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입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발성, 보호자 협조도, 자·타해 위험, 응급성 여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그림 2〉 자살 위기 시 입원을 고려할 때 대처 방법

자의입원 (정신건강복지법 41조)

정신질환자나 그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입원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가장 권장되는 형태의 입원방법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퇴원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퇴원을 시켜야 하며, 입원한 날로부터 2개월마다 퇴원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동의입원 (정신건강복지법 42조)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신청한 경우 지체 없이 퇴원을 시켜야 한다. 그러나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청한 경우에 정신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원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 퇴원이 거부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거부 사유 및 퇴원 거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정신건강복지법 43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입원방식으로 강제입원의 형태이다. 자·타해 위험으로 입원이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판단한 상황에서 내담자는 입원에 대한 자발성이 없다. 이런 경우 법적인 보호의무자가 협조가 된다면 입원이 가능한 형태이다. 이때 보호의무자는 2명이 있어야 한다. 만일 보호의무자가 1명뿐이라면 1명만으로도 가능하다. 환자가 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을 보이고, 자·타해의 위험이 있고 소속이 다른 전문가 2인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가능하다. 첫 입원기간은 3개월이며, 1차 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1차 연장 이후에는 6개월마다 심사를 거쳐야 한다.

행정입원
(정신건강복지법 44조)

환자의 자발성이 없고, 보호의무자가 협력하지 않으며, 자·타해의 위험이 존재할 때 가능한 입원형태이다. 경찰관이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전문의에게 행정입원 요청할 수 있다. 2명 이상의 정신건강 전문의에게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최초 입원 시 3개월이며, 이후 6개월마다 다시 심사한다.

응급입원
(정신건강복지법 50조)

급박한 위험으로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 41조에서 4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고 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이다. 72시간(공휴일 제외) 이후 입원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등으로 전환될 수 있다. 자살 위기자에게 가장 활용도가 높은 입원형태이다.

외래권유

자살에 대한 생각과 계획이 있지만, 자신과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없을 때에 심리상담과 더불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를 받도록 권유한다.



급성 정신증 위기 대응

1. 급성 정신증 이해
2. 급성 정신증 학생 면담과 대처
3.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01

급성 정신증 이해

주요 증상

정신증은 인지 및 사고 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현실과 망상을 구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환각 또는 망상을 경험하거나 지리멸렬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를 구사하는 경우입니다.

급성 정신증을 겪는 경우 스스로 혼란스러워하며, 때로는 자살과 타살의 위험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성으로 하루 또는 며칠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긴급 신호 이런 경우 위기상황입니다.

1. 자살하고 싶다고 말이나 행동을 해요.
2. 타인을 위협하거나 해치겠다는 언급을 해요.
3. 의식이 명료해 보이지 않아요. (예 : 눈의 초점이 흐림)

이런 행동을 합니다.

1.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2. 환청이나 환시가 있는 것 같은 환각을 보고해요.
예 : 혼자서 중얼거리거나 누군가와 대화하듯이 얘기한다.
내 이름을 부르는 정체가 모를 목소리가 들린다고 얘기한다.
3. 현실을 심하게 잘못 해석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 정보관에서 나를 계속 미행하거나 도청한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나를 해치려 한다.
4. 행동에 극단적 변화나 이상이 있어요.
예 : 며칠씩 잠을 자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으며 위생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5. 상황과 매우 맞지 않는 기정을 보이거나 전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요.
또는 감정 조절이 되지 않고 충동적이에요.
6. 수업에 자주 결석하고, 대인관계를 기피해요.

당사자는 이런 변화를 경험합니다.

1. 기분의 변화를 경험해요.
우울, 불안, 초조, 의심, 긴장, 짜증, 분노 등을 경험해요.
2. 생각의 변화를 경험해요.
집중력과 기억력이 평소보다 더 나빠져요.
평소 익숙한 것들이 다르게 느껴져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거나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치려하거나 죽이려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거나 듣지 못하는 것을 들어요.
3. 행동의 변화를 경험해요.
잠을 잘 못 자요.
식욕이 없어지거나 폭식을 해요.
혼자 있으려고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꺼려요.
공부나 일을 하는 게 어려워져요.

02

급성 정신증 학생 면담과 대처

이런 감정을 표현할 때 관심을 가져줍니다.

1. “극도로 우울해요.”
2. “안절부절못하고 심하게 초조하고 긴장돼요.”
3. “감정기복이 심해요.”

급성 정신증일 가능성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도와줍니다.

1. 따뜻하게 친절하게, 안정감을 가지고 대화세요.
2. TV 소리 등 주변 환경에 자극이 될 만한 것을 줄여주세요.
3. 상황이 즉각적인 위기가 아니더라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으세요.
※ 상담센터 ☎ 02-820-0814
4. 업무 시간 중이라면 상담센터에 동행해주세요.
업무 시간 이후라면 24시간 위기상담전화(☎ 1577-0199)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심리적으로 위기라고 판단되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때로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충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살 위험이 있는 경우 자살위기대응 안내에 따르세요.
2. 누구에게든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도움을 청하세요.
※ 상담센터 ☎ 02-820-0814
3. 학생을 돌보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연락합니다.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에게 연락하여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을 고려한다면?

- p. 11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을 참고합니다.
1. 자의 입원(정신건강복지법 41조)
 2. 동의 입원(정신건강복지법 42조)
 3.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정신건강복지법 43조)
 4. 행정 입원(정신건강복지법 44조)
 5. 응급 입원(정신건강복지법 50조)

03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위기학생면담, 이렇게 하세요.

학생을 걱정하고 있고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로 부드러운 어조로 명확하게 얘기해주세요.

“지금 다소 혼란스러워 보이신구나. 그럴 수 있어.

네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같이 상황에 대해 얘기해보고 싶는데 어때니?”

“내가 보기에 지금 너한테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듣기로 학교 상담센터에서 이런 문제를 잘 얘기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나랑 같이 가보는 게 어떨꺼니?”

다음 사항을 주의하세요.

학생이 면담이나 상담센터 방문을 거절한다면, 학생이나 보호자가 연락할 수 있는 위기 시 전화번호 정보를 제공해주세요.

(상담센터 ☎ 02-820-0814, 24시간 위기상담전화 ☎ 1577-0199)

1. 학생의 비합리성에 대해 논쟁하거나 훈계하기

생각이 옳지 않거나 비합리적이라고 일방적으로 훈계하거나 논쟁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너 혼자만의 착각일 뿐이야.”

2. 망상적 내용이나 환각 회화하기

학생의 문제와 고통감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놀리거나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네가 이상한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네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줄 아니?”

3. 낙인찍기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고 정신병자라고 낙인찍거나 소외시키는 것은 앞으로의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OO가 정신병이 있대. 멀리해야겠다.”

“이제 OO는 공부 못하겠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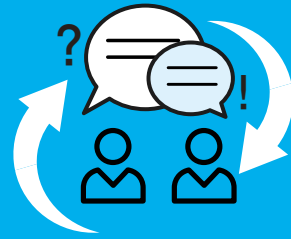
학부모 연락하세요.

학생의 동의를 구한 후 보호자에게 연락합니다.

“내가 보기에 지금 너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이 상황을 부모님께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

※ 학생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학생에게 고지하고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OO 교수입니다. OO 학생의 지도교수이고요. 학생과 면담 도중 OO가 평소와 다르게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OO에게 얘기한 후 연락을 드립니다. 학교 상담센터나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빨리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격적 · 폭력적 위협 대응

1. 공격적 · 폭력적 위협 이해
2. 공격적 · 폭력적 위협 대처 행동
3.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01

공격적 · 폭력적 위협 이해

위협하는 이유

누군가가 욕설 또는 협박을 하거나, 심한 모욕을 주며 분노 표출을 하는 경우, 또는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을 하는 경우에, 우리는 당황하거나 두려움을 느끼고 또는 같이 화가 나게 됩니다.

1. 좌절스러운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방법을 모르거나,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 크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화를 내거나 지속해서 화를 내는 경우, 이러한 행동으로 자신이 통제감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2. 때로는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급성 정신증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고, 전문가(상담센터 ☎ 02-820-0814)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하지만 정신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폭력의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 신호 이런 경우 위험합니다.

- 1. 타인을 해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 2. 폭력의 위험이 임박한 느낌이 들어요.
- 3. 신체적 위협이 될 만한 물건이나 도구를 가지고 있어요.
- 4. 자살하고 싶다는 말이나 행동을 해요.

이런 행동을 합니다.

- 1. 언어적으로 심한 욕설이나 비난을 퍼부어요.
- 2.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폭력적인 위협의 내용을 보내요.
- 3. 누군가를 해치고 싶다는 언급을 해요.
- 4. 신체적으로 위협이 될만한 행동을 하려고 해요.
- 5.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보복하겠다는 위협을 해요.

02

공격적 · 폭력적 위협 대처 행동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위협적인 내용을
보내거나 직접 말할 때

1. 경찰(112)에 신고합니다. 이메일로 위협하는 사람의 신원을 모를 때에는 경찰에서 사이버 수사가 가능합니다.
2. 상담센터 (☎ 02-820-0814)에 신고 또는 자문을 구합니다.

공격적 · 폭력적
위협을 보인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1단계 : 상황을 진정시키기

1. 가능한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2. 상대방이 화가 난 것을 인정해주고, 공감적인 태도로 어떤 것에 화가 났는지 얘기할 수 있도록 하세요.
“네가 화가 나고 좌절된 것 같구나.”
3.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의 한계를 명확히 얘기하세요.
“네가 화가 난 이유와 상황을 이해해보고 싶구나. 단, 화를 내지 않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네가 소리를 지르면 잘 들을 수가 없다.”
4. 상대방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 화를 낸다면, 다시 얘기할 수 있는 다른 일정을 잡도록 요청하세요.
“오늘은 대화를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자. 진정이 된 후에 다시 얘기하면 좋겠다.”

2단계 : 주변에 도움 요청하기

1. 상대방에게 얘기하세요.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지 찾아보겠다.”
2. 상사나 동료에게 상황을 의논하세요.
3. 이후의 안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세요. (부서장, 학과장 등과 논의하세요.)

3단계 : 안전 확보하기

1. 개방된 공간에 있으세요.
2. 안전이 위험한 상황이라면 112에 전화하세요.
3. 도움을 요청하세요. (다른 사람을 보내 학과장이나 학생처 직원을 불러오도록 하세요.)
4. 안전한 장소로 피하세요.

03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다음 상황을
주의하세요.

1. 안전을 우선으로 하세요.

가능한 상대방과 혼자 만나지 말고, 단둘이 만나야 할 경우에는 개방된 공간에서 만나세요. 출입구와 당신 사이에 상대방이 있지 않도록 하세요. 출입문을 개방해두고 출입구 쪽에 앉으세요.

2. 상대를 위협하거나 몰아세우거나 논쟁하지 마세요.

논쟁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며 대결하지 마세요. 그러면 불안감과 공격성이 오히려 고조됩니다.

위협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규정을 위반하는 요구야 아무에게도 그런 요구를 들어준 적이 없대!”

“여기가 어디 줄 알고 소리를 질러?”

3. 판단적인 태도는 삼가주세요.

상대의 잘못을 판단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이건 네가 잘못된 거야.”

4. 분노 고조에 따른 위협을 무시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분노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면 그 징후를 무시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5. 신체적 접촉을 삼가세요.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거나,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느낄 만한 거리를 침범하지 마세요.

공격적 · 폭력적 상황을
목격하고, 심리적 증상을
경험한다고 하면

1. 공격이나 폭력의 위협을 겪을 때 불안하고 잠이 오지 않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 심리적 증상을 흔히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담센터(☎ 02-820-0814)에 문의하도록 안내해주세요.

“그런 일을 목격하고 나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처럼 불안하고 잠이 안 오거나 집중이 안 되는 것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하더군요. 혹시 필요하면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떨겠니?”

2. 위협에 대해 자신이 너무 예민한 것인지, 과잉반응하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본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상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본인입니다. 자신의 느낌을 무시하지 말고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교내 및 공적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안내해주시요.

“네 느낌이 그렇다면 과민반응이라고 지적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렇게 느낄 수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면 심리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보면 좋겠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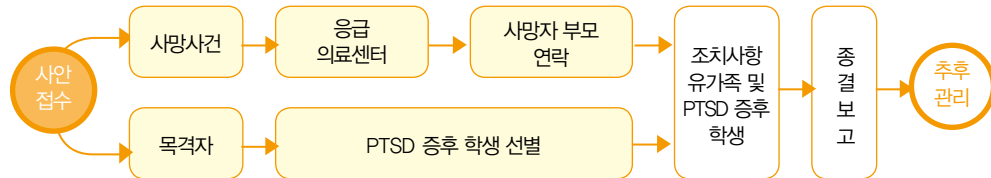
사건 · 사고로 인한 위기 대응

1. 사망 · 상해 사고 대응
2. 사건 · 사고 보고 체계
3.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해
4.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01

사망 · 상해 사고 대응

사망 사고 발생 시 대응



1. 사망 사건이 발생한 후에는 응급의료센터 119와 경찰 112에 연락합니다.
 2. 학생처에 연락합니다. (학과 사무실이나 상담센터 등 유관기관에 연락을 취합니다.)
 3. 보호자에게 연락합니다.
 4. 사건 목격자나 시신 발견자들은 모아서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격리시키고 명단을 작성합니다.
 5. 목격자들 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선별하여, 상담센터에 연계합니다.
- ※ 상담센터는 위기상황 발생 시 상담심리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를 검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심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응급으로 판단되는 경우나 교육 배려자에 해당하는 경우, 약물치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 사항을 주의하세요.

1. 이때 시신을 움직이거나 다른 증거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2. 현장을 보존하고, 일반 학생이나 교직원이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 · 감독합니다.

02

사건 · 사고 보고 체계

위기상황 접수 및 상황보고

1. 유선 상 접수된 내용에 대해 현장 확인 전 최초 보고를 실시한다.
2. 접수된 위기상황을 보고체계에 의거하여 보고하고, 학생팀장 → 학생처장 → 부총장 → 총장
3. 유관부서 및 유관기관에 전달한다. 학생처, 상담센터, 학과 사무실, 국제처, 홍보팀 등

현장 확인 · 학생처 주관

1. 접수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상황파악을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2. 현장 조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생처 자체적 또는 유관부서와 동행하여 실시한다.

유관부서 전달

1.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파악된 내용에 추가하여 보고하고, 유관 부서에 정확한 내용을 전달한다.
2. 언론사가 관련되어 있을 경우 홍보팀에 반드시 전달하여 학교 공식입장은 홍보팀을 통해 전달하고 개인의견 피력 및 입장 표명은 하지 않는다.

상황조치 · 교내 · 외 사고로 인한 학생 사망사건 발생

1. 현장 확인 후 주변 학생 인적사항 확보,
2. 사고경위 파악 및 현장 확인,
3. 사고자 학생 신분 확인 후 소속 단과대학으로 내용 전달,
4.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홍보팀으로 내용 전달,
5. 목격자들 중 PTSD 증후를 보이는 학생들이 있는지 선별하여, 상담센터에 연계한다.

· 교내 · 외 사고로 인한 학생 상해사건 발생

1. 현장 확인 후 사건 관련 학생 인적사항 확보,
2. 사고경위 파악 및 현장 확인,
3. 사고자 학생 신분 확인 후 소속 단과대학으로 내용 전달,
4. 목격자들 중 PTSD 증후를 보이는 학생들이 있는지 선별하여, 상담센터에 연계한다.

경과보고

1. 발생한 위기상황에 대한 상황조치 후 경과보고(중간보고)를 실시,
2. 각종 교내외 관련 및 학생 반응 모니터링 실시한다.

관련 자료 기록

1. 재발 방지 및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관련기록 유지,
2. 관련사항을 보고(사건의 경중을 고려) 한다.

03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가능성

- 1.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협이 있는 외상적 상황은 경험이 끝난 이후에도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2. 외상은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 3. 외상적 상황 중에 경험한 강한 두려움, 무기력증 또는 공포가 뇌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4. 사건이 발생한 지 1개월 동안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 5. 그러나 1개월 후에도 그렇다면, 심리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상담센터 ☎ 02-820-0814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야기하는 상황

- 1. 전투 참전
- 2. 성적 또는 신체적 폭력의 경험 또는 목격
- 3. 자연적 (예, 홍수나 태풍 피해) 또는 인위적 재해 (예, 심한 자동차 사고) 경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1. **침투 증상(사건이 반복적으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생각에 침투함)**
악몽을 꾸거나, 사건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flashback 현상을 체험하곤 합니다.
- 2. **회피증상 : 외상을 기억하도록 하는 요인을 회피합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거나,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하고, 외상적 사건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또는 대화를 피하려고 합니다.
- 3. **생각과 기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외상적 사건의 중요한 부분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해리성 기억상실). 정서적으로 무감각하거나 다른 사람과 분리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며, 이전에 즐기던 활동에 흥미를 덜 나타냅니다. 사건에 대한 생각이 왜곡되어 자책하거나 타인을 비난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자신만 생존했다는 데 대한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려움, 공포, 분노, 수치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만 느낄 수 있고, 행복이나 만족감 또는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 4. **각성과 반응의 변화**
잠들기 어렵거나,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험에 대한 경고 징후에도 과도하게 경계하거나 쉽게 놀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반응을 잘 조절하지 못하게 되어 무모한 행동을 하거나 분노가 분출될 수 있습니다.
- 5. **기타 증상**
일부는 불안을 경감시키고자 의례적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성적인 폭력을 당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목욕을 함으로써 깨끗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없애려고 합니다.

04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최근 외상적 사건을 겪고 평소와 다르게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다면?

1. 면담을 위해서 학생을 호출합니다.

“잠깐 얘기 좀 할까?”

2. 최근 수업시간에 보이는 학생의 변화를 말해주고, 무슨 일이 있는지 묻습니다.

A: “요그래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나?”

B: “사실 요그래 잠도 잘 못 자고, 신경이 예민해져서, 누가 건드리지만 해도 폭발할 것 같아요.”

3. 학생이 자각하지 못한다면, 최근 있었던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묻습니다.

A: “혹시 지난 번 있었던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B: “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4.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을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상담센터 심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권합니다.

A: “혹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닐까 싶네. 상담을 받아보면 어떨까?”

다음 사항을 주의하세요.

1. 의지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놀라고 무서운 외상적 경험은 뇌신경의 반응체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심리구조를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2. 외상적 사건을 경험한다고 해서 누구나에게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천천히 증후를 보이기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지켜보는 게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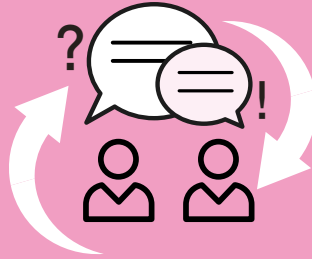
▶ 죽음과 같은 상실을 경험한 경우 2년 정도의 애도 기간을 예상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2년 동안 전혀 애도가 진행되지 않기도 합니다.

3.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로는 지나치게 신경질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지나치게 멍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외상적 사건을 경험한 후에 지나치게 신경질적일 때도 지나치게 멍하게 보일 때도 심리전문가의 상담을 권유해주시시오.



대학장면에서 위기대응 매뉴얼

- 교직원용 -



성희롱 · 성폭력 사건 대응

1. 성희롱 · 성폭력 이해
2. 성희롱 · 성폭력 대응
3.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4. 성희롱 ·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01

성희롱 · 성폭력의 이해

성희롱 정의

성희롱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성적 언동으로서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무시한 인권침해의 문제입니다.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사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성희롱 유형

육체적 성희롱 : 신체적 접촉,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 : 외모에 대한 성적 평가, 성적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트리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통화, 술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일으키는 언어나 행동

시각적 성희롱 : 외설적 사진, 그림 등을 보여주는 행위, 메일이나 핸드폰을 통해 음란한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

동의 없는 신체 접촉

친밀함을 가장한 과도한 신체 접촉

좋아한다는 핑계로 일방적으로 가하는 성적 행동

술에 취해 있거나 잠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접촉

“그 선배는 말하면서 꼭 엉덩이를 툭툭 건드리는데, 전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동의를 기준

성희롱의 여부는 ‘동의’의 여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동의’의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비언어적 몸짓이나 침묵 등의 행동은 상대방의 주관적 해석에 의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언어표현으로 ‘예’라는 의사를 전달할 때만 진정한 ‘동의’의 의미가 성립됩니다.

- ① 동의는 선택에 기초한다.
동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동의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것이며,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약점을 잡아 상대방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행위는 동의라고 볼 수 없다.
- ③ 동의는 동등한 힘이 있을 때 성립된다.
선배나 교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동의를 이끌어내는 행위는 옳지 않다.
- ④ 두려워하면서 하는 동의는 진정한 동의가 아니다.
물리력을 동원한 협박을 통해 얻어낸 동의는 진정한 의미의 동의가 아니다.
- ⑤ 심신미약 등의 판단력 저하의 상태에서의 ‘예’는 진정한 동의가 아니다.
술에 취했거나 정신이 혼탁한 상황에서의 행동을 동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성폭력 정의

개인의 성적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1. 소극적인 성적의사결정권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

2. 적극적인 성적의사결정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와 취향을 누릴 권리”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합니다. 강간, 성추행, 성희롱, 스토킹, 불법 촬영 등의 행위가 성폭력에 포함됩니다.

성희롱 · 성폭력의 예

1. 수면 중이거나 술 취한 상대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 하는 경우
2. 갑자기 가슴이나 엉덩이를 툭 치는 등의 가슴추행 하는 경우
3.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간음 혹은 추행하는 경우
4.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하는 경우
5. 13세 미만(형사법상)/19세 미만(소년법상) 아동과 폭행 · 협박 없이 동의하에 성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
6.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음란한 글이나 그림, 영상을 전송 · 게시 하는 경우
7.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게시 · 배포 · 판매하는 경우
8. 동의하에 신체를 촬영한 후 의사확인 없이 게시 · 배포 · 판매 하는 경우
9. 결혼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 유인하는 경우
10.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샤워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경우

데이트 폭력

1. 스킨십, 성관계를 조르거나 강요하는 경우
2. 연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간섭하는 경우

예 : 2시간 사이 부재중 50통, 휴대폰 몰래 확인하기, 주변 친구 관계 단절 요구, 귀가 시간, 단속, 옷차림 / 외모 단속

스토킹

1.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유발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전화, 이메일, 온라인 게시판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을 사이버스토킹이라고 합니다.
3. 스토킹의 대상은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스토킹은 그 자체만으로도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이후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사안입니다.

02

성희롱 · 성폭력 대응

피해자 대처

1. 상대방의 언행으로 내가 느끼는 피해감정에 확신을 갖는다.
2. 피해의 영향(감정, 생각, 행동)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표현한다.
3. 상대방에게 행위중지와 행위책임을 구체적으로 요청한다.
4. 상담센터 양성평등팀에 피해자 보호와 구제를 신속히 요청한다.

행위자 대처

1. 나의 입장이 아니라 피해자 입장을 수용한다.
2. 반성하고 즉각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
3. 가해행동으로 인한 책임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4.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잘못된 생각과 습관을 바로 잡는다.

제3자 대처

1. 학과 · 동아리 · 각종 모임 등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피해자와 행위자를 대하는 주위 사람들의 태도와 대처방식이 문제 해결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2. 행위자에 대한 온정적인 시선이나 피해자 책임론적인 태도는 2차 가해로 이어져 사건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

2차 가해 하지 않도록 주의!

1.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사건을 누설하는 경우
2.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소문을 내는 경우
3. 피해자 및 사건 관련자에게 각종 불이익을 주는 경우
4.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사건을 묻거나 중재하려고 하는 경우
5. 행위자에게 동조하여 피해자와 주위 관련자들에게 언어적으로 협박하거나 물리적인 강압을 통해 화해를 종용하거나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경우
6. 교내 성폭력대책위원회는 피해자와 사건 관련자들이 2차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2차 가해로 규정하고 행위자 혹은 동조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피해자의 고통 이해하기

1.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인식하지 못한 채 멍할 수 있다.
2. 남들이 “너도 잘못된 게 있겠지?”라고 생각할까 봐 불안하다.
3. 상대방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을 탓하게 된다.
4.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 시도 때도 없이 의식으로 침투한다.
5. 공포, 불안, 분노, 자책감, 자괴감, 수치심, 신경질, 짜증, 불면증, 우울, 자살충동 등을 경험한다.
6.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고, 인간관계에서 철수한다.
7. 몇 년이 지나더라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고통이 느껴진다.
8. 이런 사건을 당한 자신을 혐오하게 된다.
9.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다.

03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위급한 사건 현장 • 피해자 지원

1. 피해자 보호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하여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고 안정할수 있도록 돌봅니다.

2. 외부기관 협조

강간, 심각한 수준의 성추행, 폭행 등 위중한 피해상황이라면 응급지원요청(119), 범죄신고(112)를 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합니다.

성폭력 증거채취가 필요하면 해바라기센터(☎ 02-3672-0365)나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2890)에 연락합니다.

3. 조사

매우 위중한 상황이 아니라면, 피해자의 동의하에 사건에 대한 1차 조사를 실시합니다.

4. 귀가조치

위 조치들이 완료되면 피해자의 보호자를 동반하여 피해자를 귀가시킵니다.

• 피신고인(가해자) 조사

1. 신병확보

현장에서 피신고인의 가해 행위가 확인되었다면,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신병을 확보합니다.

조용히 별도의 조사장소로 인도하되, 저항을 고려하여 2명 이상이 동행합니다.

2. 피신고인(가해자) 조사

중립적이며 정중하게 신원과 연락처를 확인하고, 사건에 대한 진술(녹음)을 확보합니다. 가능하다면 사실 확인 후 진술서(지필, 서명)나 사과문(지필, 서명)을 받습니다.

위급하지 않은 상황 • 피해자 면담

1. 문제행위를 알면서 침묵하기보다는 문제제기를 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도록 돕습니다.

2. 누군가 피해 경험을 이야기 해 온다면 일단 충분히 잘 들어줍니다.

3. 다 듣고 “힘들었을텐데 믿고 얘기해줘서 고맙다”라고 말해줍니다.

4. 상담센터의 양성평등팀에 신고를 권유합니다.

※ 상담센터 양성평등팀 ☎ 02-820-0843, ge-counsel@ssu.ac.kr

5.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준비가 될 때까지 옆에서 소통하고 힘을 줍니다.

다음 사항을
주의하세요.

1. 훈계 및 추궁하기

- “왜 그런 곳에 간 거야?”
- “옷차림은 왜 그러니?”
- “적극적으로 저항은 했니?”
- “아무 것도 안 했는데 그런 일이 생기겠냐?”
- “너도 부분적으로는 책임이 있지 않니?”

2.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기

- “피해를 당했다면서 너는 멀쩡하게 학교 잘 다니네....”
- “피해자치고는 아무런지도 안 보여네....”

3. 회유하기

- “그렇게 심한 일도 아닌데, 이번만 넘어가주면 어때니?”
-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하는데, 합의를 해주면 안 될까?”

※ 성희롱 ·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희롱 ·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1. 거부의를 밝히는 것은 쉽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하는 내숭이다.
2. 침묵은 사실상 동의한 것이다.
3. 동성끼리는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는다.
4.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이 성폭력을 야기한다.
5. 남자의 성충동은 억제할 수 없다.
6. 단 한 번이었고 의도가 없었으므로 성희롱 · 성폭력이 아니다.
7. 성폭행이라면 성적 흥분이 일어나지 않는다.

※ 즉시 문제제기 하기 어려울 상황이라면, 필요한 정보와 도움에 대해서
상담센터 양성평등팀과 상담하시고, 이후에 결정하셔도 됩니다.

양성평등팀의 모든 상담은 비밀유지가 원칙입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04

성희롱 ·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비공식처리

양성평등팀 주관 하에 당사자 간 합의 · 중재 처리

공식처리

1. 상담 및 사건 접수

방문, 전화, 이메일 신청 (온라인 신청 2020년부터)

피해자 또는 대리인 신고가능

타부서에서 성희롱 ·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즉각 상담센터에 통지

※ 상담센터 양성평등팀 ☎ 02-820-0843 / ge-counsel@ssu.ac.kr

2. 사건 조사

신고인 조사 / 피신고인 조사

참고인 조사 / 증거자료 검토 및 조사

3. 심의 의결

성희롱 · 성폭력 대책위원회

성희롱 · 성폭력 여부 판단

사건조정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 발의 요청

4. 사건 처리

대책위원회 조치

해당 징계권자 조치

5. 결정 통보

서면으로 사건처리 통보

교내

- 방문 학생회관 502호 (상담센터)
- 전화 ☎ 02-820-0843
- 이메일 ge-counsel@ssu.ac.kr
- http://counsel.ssu.ac.kr

교외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 · 성폭력 신고센터
여성긴급전화 ☎ 1366
- 보라매원스톱지원센터 ☎ 02-870-1700, 1117
- 한국여성상담센터 ☎ 02-953-1504
-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 02-2263-6465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02-739-8858
-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전화 ☎ 02-338-2890
- 국가인권위원회 ☎ 02-2125-9700
- 해바라기 센터 ☎ 02-3672-0365



대학장면에서 위기대응 매뉴얼

- 교직원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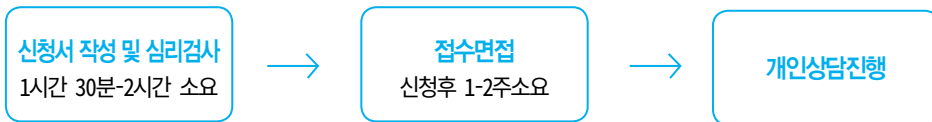


송실대 상담센터 소개

송실대 상담센터 소개

송실대 상담센터는 다양한 심리적 주제(정서, 가족관계, 대인관계, 성(性), 진로, 학교생활 등)와 관련한 고민 및 어려움이 있을 시 상담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개인의 신상정보나 상담내용에 관한 일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개인상담,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집단상담, 성 고충상담 등이 있습니다.

① 개인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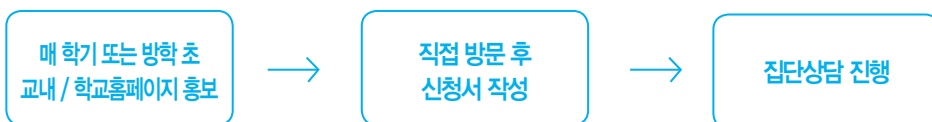
개인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직접 만나서 대화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센터로 직접 오셔서 신청서 작성 및 심리검사 실시를 완료하신 이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심리적 어려움이 있을 시 개인상담을 통하여 문제해결과정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통한 심리적인 성숙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유학생들에게도 영어와 중국어로 동일하게 상담서비스 제공 가능).

② 심리검사



여러 가지 심리검사를 통하여 자신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격선호도검사(MBTI), 직업적성검사(Holland), 다면적 인성검사(MMPI-2), 문장완성검사(SCT) 등 다양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에 방문해 주시면 희망하는 심리검사신청 및 실시 후 결과분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송실대 재학생에게 모든 심리검사는 무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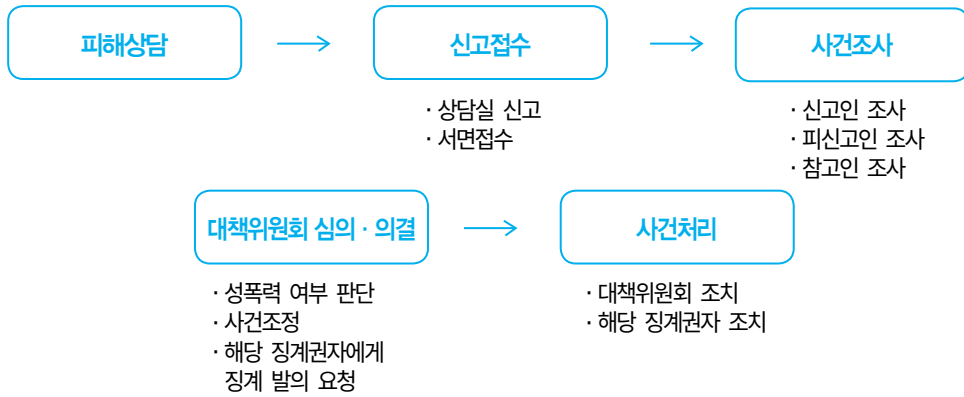
③ 집단상담



집단상담은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4-8명) 상담전문가의 인도 하에 이야기를 나누고 감정을 소통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유사하게 감정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음을 알게 되며, 심도 깊은 자기이해· 타인이해를 도모하게 됩니다. 학기당 매주 1회(2시간), 8회기 정도 진행됩니다. 사전에 신문 및 안내문을 통해 집단개설이 공지되며, 선착순 모집합니다.

④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상담

→ 공식 절차



→ 비공식 절차

비공식적 절차는 상담기구의 개입을 통해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며 위와 같은 방법은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다음과 같을 때 적용합니다.

- 비밀보장에 대한 당사자들의 요구 수준이 높은 경우
- 사건의 해결방법에 대해 당사자들의 합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 사건의 성격이 당사자들의 개인적 노력이나 상담기구의 도움으로 해결이 가능한 상황인 경우

→ 성희롱·성폭력 피해상담

성희롱, 성폭력 등의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및 사건 대응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과 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외 기관에 연계하여 사건 해결을 지원합니다.

→ 성희롱·성폭력 피해신고

- 우리 학교의 구성원이 포함된 성희롱·성폭력 사례는 상담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는 전화, 직접방문, 서면제출, e-mail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 전화 : 02-820-0843 (양성평등팀 직속번호)
- 직접방문 : 학생회관 502호 상담센터 양성평등팀
- 서면제출 : <http://counsel.ssu.ac.kr> → 피해신고서 다운로드 → e-mail 제출
- E-mail: ge-counsel@ssu.ac.kr

→ 양성평등팀에서 하는 일

-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사건을 처리합니다.
-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을 합니다.
-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 관련기관 연계 등의 대응책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합니다.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 및 예방책에 대한 조사와 연구활동을 합니다.

⑤ 연례행사

→ 신입생 / 재학생 / 유학생 실태조사

재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정신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며, 이를 바탕으로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 정신건강 선별검사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통해 재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신건강의 위험이 있는 재학생들이 질병이 발병되기 이전에 발견하여 조치를 취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 폭력예방 공모전

본교 구성원들이 폭력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을 점검하여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교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상담센터이용안내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송실대학교 신학생회관 502호 상담센터
 TEL : 02) 820-0814 (상담) / 0843 (양성평등)
 E-mail : counsel@ssu.ac.kr
 상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학기중 09:00 ~ 17:30 / 방학중 10:00 ~ 17:00)

대학 장면에서 위기대응 매뉴얼

발 행 인 박 승 민 상담센터장
연 구 자 안 인 숙 연구교수
감 수 자 심 은 정 상담교수
발 행 일 2019년 10월

